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1. 일 시 : 2019.12.11.(수) 17:00~20: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
3. 참석위원 : 이형천, 김지훈, 정채욱, 곽영후, 정수중, 김종태, 정호신, 한재관
불참위원 : 이교범, 김대중, 김현빈
4. 회의내용
 - 본 위원회 연장자인 이형천위원이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를 선언하다
 - 본교 학칙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음을 이형천위원이 설명하고, 이에 김지훈 위원이 이형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으며 참석위원의 만장일치로 이형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다
 - 이형천위원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관련 설치근거, 구성, 기능, 역할을 설명하다
 - 이형천위원장은 각자 위원별로 자기소개를 요청하다
 - 이형천위원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일정 및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설명하다
 - 모든 위원들은 예산관련 모든 자료를 등록금심의기간 동안 회의 장소에서만 공개 열람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반납하기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하다
 - 예산팀장은 2020학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대해 설명하다
 - 예산팀장은 대외 주요 재정 정책 변화로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한 대학교육의 혁신 및 전략적 재정투자 필요,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요구 및 학부 입학금 감축, 정부고시 최저임금 2.9% 인상, 2019-2학기 강사법 실시,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전략적 재정 투자의 필요성을 설명하다
 - 예산팀장은 대내 주요 재정 정책 변화로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국고수입 증대가 있지만, 지난 12년간 학부 등록금 동결로 신규 사업 추진 여력의 부족, 학부입학금의 단계적 인하로 인한 등록금 감소, 최저임금 2.9% 인상으로 인한 용역비(경비, 청소 등) 증가, 기부금 수입 감소를 설명하고 2019-2학기부터 시행된 강사법에 따라 2020학년도에 추가 재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다

- 예산팀장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2020학년도 본예산의 예산편성 기본목표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아주비전 4.0달성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재정투자의 효과성, 재정운영의 효율성, 재정수입의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재정 투자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아주비전 4.0 전략과제 집중투자,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편성, 단과대학 직접교육비 중심 예산 배분 및 국고 연계,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Zero-based 예산편성, 유사·중복사업의 통합 운영, 학부 및 대학원의 적절 개설과목수(반수) 운영, 재정수입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순수외국인 적극 유치 및 계약학과 운영, 정부재정지원사업 및 연구수탁과제 확대, 기부금 등 비등록금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다
- 예산팀장은 2020학년도 각 부서로부터 접수된 본예산내역에 대해 수입조정 사항과 지출조정사항(계속사업 지출조정, 신규사업 예산반영)을 설명하고 부서별 예산조정 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보류사업 예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다
- 이형천위원장은 각 위원들에게 예산팀장이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요청하다
- 이형천위원장은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비율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비율은 2019학년도 2차 추경기준으로 48.2%라고 설명하다
- 이형천위원장은 기부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은 기부금 유치 활동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대학발전팀을 두고 1-1-1캠페인 등 기부금 수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기부금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다
- 교직원위원은 2020학년도 교직원 명예퇴직 예산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2020학년도 교직원 명예퇴직은 총 5명 내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주관부서의 정책과 시행에 따라 인원과 집행예산이 변동될 수 있다고 답변하다
- 전문가위원은 2020학년도 신규사업(안)과 보류사업(안)은 확정된 사항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은 2020학년도 신규사업(안)과 보류사업(안)은 2020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을 반영할 경우 신규 사업으로 가능한 사업과 예산상 불가능한 보류사업(안)을 제시한 것이며, 2020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의결사항은 2020학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한다고 답변하다

- 이형천위원장은 2016학년도 이후 등록금 수입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은 수도권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에 따라, 2016~2017학년도 입학정원을 79명 감축하여 등록금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답변하다
- 이형천위원장은 재학생수를 만명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2016~2017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을 보완하기 위해 순수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고 순수외국인도 재학생수에 반영되므로 재학생수를 만명 이하 유지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하다
- 교직원 위원은 계속사업 중 공용장비유지보수비는 노후 장비로 인한 비용증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후장비 교체 등을 통한 공용장비유지보수비 예산 절감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다
- 예산팀장은 노후 장비로 인하여 공용장비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가 기자재는 신규 장비교체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점진적으로 교체해 가고 있다고 답변하다
- 이형천위원장은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위원에게 질의하다
- 위원 전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최종 등록금책정(안)을 본 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는 것에 찬성하다

[심의 안건 1호 : 2020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 위원장은 기획처장에게 심의안건 1호 「2020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다
- 기획처장은 학부 입학금 전년대비 23.5% 인하(안), 수업료 2.2% 인상(안), 일반대학원 입학금 동결, 수업료 2.2% 인상(안),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수업료 인상(안)에 대해서 설명하다
- 전문가위원은 등록금은 몇%까지 인상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은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 7항에 따라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에 따라 2.2%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답변하다
- 전문가위원은 전년도의 등록금 인상률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은 2019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학부 수업료 1.8% 인상을 가결하였으며, 단, 학부수업료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국가장학유형Ⅱ 및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여부 제한

-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다고 정한 바 있다고 답변하다
- 전문가위원회는 등록금 최종 인상 또는 동결은 어느 단계에서 결정되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은 등록금 인상이 본 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고 답변하다
- 전문가위원회는 등록금 납부 책정(안)의 제안 내용 중 등록금 외화(달러) 납부(안)은 순수외국인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다
- 예산팀장은 등록금 외화(달러) 납부(안)은 순수외국인에 대한 입학절차상 필요한 조치로 순수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하다
- 위원장의 등록금 외화(달러) 납부(안)을 순수외국인에 한 해 적용하는 안에 대해 위원 전원이 찬성하다
-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제1호 안건에 대해 학부 입학금은 전년대비 23.5%인하(안), 수업료는 2.2% 인상(안), 일반대학원 입학금은 동결(안), 수업료는 2.2% 인상(안), 특수·전문대학원 및 계약학과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다
- 위원장은 제1호 안건에 대해 투표결과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본 안건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설명하다. 단, 학부 수업료 인상률 2.2%는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국가장학유형Ⅱ 및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여부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다고 정하다
- 위원장은 제1호 안건 「2020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함을 공포하다

[심의 안건 2호 : 2020학년도 주요 시설공사 실시(안)]

- 위원장은 기획처장에게 심의안건 2호 「2020학년도 주요시설 공사실시(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다
- 기획처장은 「2020학년도 주요 시설공사 실시(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본 안건 상정기준은 공사금액 50,000천원 이상인 실내·외 환경개선 공사이며, 전기, 설비, 기계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관리 사업은 포함하지 않았음을 설명하다

- 학생위원은 노후건물 외부 도장 공사에서 노후건물의 기준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은 노후건물 외부 도장 공사는 계속사업으로서 시설팀이 건물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한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은 제2호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본 안건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설명하다
- 위원장은 제2호 안건 「2020학년도 주요시설 공사실시(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함을 공포하다

이형천위원장은 추가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

2019. 12. 11.(수)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이형천		위원	곽영후	
위원	이교범	(서명)	위원	정수종	
위원	김대중	(서명)	위원	김종태	
위원	김지훈		위원	정호신	
위원	김현빈	(서명)	위원	한재관	
위원	정채욱				